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어기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690

발의연월일: 2021. 4. 23.

발 의 자 : 어기구·김승원·노웅래

임종성 · 정춘숙 · 서삼석

김병욱・윤준병・강훈식

유정주 · 고용진 의원

(119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피학대동물에 대하여 치료·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,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·상담 등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교화 수단이 미흡함.

또한 피학대동물이라 하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(3일이상)이 경과하면 동물의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반환하도록 함에 따라 피학대동물이 지속적인 학대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학대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한 경우 그 학대행위자에게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·교육 등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, 법원은 동물의 생명, 안전 및 복지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학대행위를 한 소유자등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상실 또는 제한을 선고

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5항, 제14조의 2 및 제20조제3호의2 신설). 법률 제 호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 제목 중 "보호"를 "보호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학대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한 경우 그 학대행위자에게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·교육 등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동물에 대한 소유권 등 상실 선고) 법원은 소유자등이 동물을 하대하여 동물의 생명, 안전 및 복지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청구에 의하여 학대행위를 한 소유자등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, 점유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의 상실 또는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.

제20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14조의2에 따라 법원이 학대행위를 한 소유자의 해당 동물 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동물의 구조ㆍ <u>보호</u>) ① ~	제14조(동물의 구조・ <u>보호 등</u>) ①
④ (생 략)	~ ④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⑤ 시・도지사와 시장・군수・
	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학대
	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
	한 경우 그 학대행위자에게 학
	대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・교
	육 등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
	<u>있다.</u>
<u><신 설></u>	제14조의2(동물에 대한 소유권
	등 상실 선고) 법원은 소유자
	등이 동물을 학대하여 동물의
	생명, 안전 및 복지를 현저히
	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
	우에는 시・도지사와 시장・군
	<u>수·구청장의 청구에 의하여</u>
	학대행위를 한 소유자등의 해
	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, 점유
	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
	의 상실 또는 제한을 선고할
	<u>수 있다.</u>
제20조(동물의 소유권 취득) 시ㆍ	제20조(동물의 소유권 취득)
도와 시・군・구가 동물의 소	

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3. (생 략)

<신 설>

4. (생략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3의2. 제14조의2에 따라 법원이 학대행위를 한 소유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경우

4. (현행과 같음)